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금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4
----------	-----

발의연월일 : 2016. 9. 30.
발의자 : 김금용 · 손철운
정창일 · 박승희
박병만 · 유제홍 의원
(찬성자 2명)

□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지역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유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질소산화물(NO₂로서)의 기존 배출허용기준 강화(별표)
 - 발전 5개사 및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지역난방 등 소규모 4개 발전사 배출허용기준 신설
 -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황산화물(SO₂로서)의 배출허용기준 신설(별표)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1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2조 관련>

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배출허용 기준
질소 산화 물 (N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50(6)ppm이하 15(6)ppm이하
	나) 신규시설	10(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 스터빈 포함)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5)ppm이하 30(15)ppm이하 10(15)ppm이하
	나) 신규시설	10(15)ppm이하
	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 그 밖의 발전시설	10(15)ppm이하 13(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2)ppm이하 50(12)ppm이하
	나. 신규시설	35(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60(12)ppm이하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40(12)ppm이하

황산화물 (S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40(6)ppm이하 23(6)ppm이하
	나) 신규시설	15(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미만(LNG사용시설 제외)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그 밖의 발전시설(바이오가스 사용시설 포함)	90(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20(12)ppm이하
	나. 신규시설	15(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2)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15(12)ppm이하 10(12)ppm이하

- 비고 1.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기존시설이란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배출시설이 가동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4. 발전시설의 기체연료 사용시설 중 100MW 미만의 기존시설은 다음의 기준 농도를 적용한다.

사업장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 에코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40(4)ppm이하
	황산화물(SO ₂ 로서)	120(4)ppm이하
(2) 미래엔인천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48(4)ppm이하
(3) 인천공항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70(15)ppm이하
(4) 인천종합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40(15)ppm이하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법령</p>	<p>□ 대기환경보전법</p> <p>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u></p> <p>④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⑥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 없음”</p>
<p>관련자료</p>	<p>“해당 없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
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김 재 경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오염물질</th> <th style="width: 45%;">배출시설</th> <th style="width: 40%;">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질소산화물(NO₂로서)</td> <td>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설비용량 100MW이상)</td> <td></td> </tr> <tr> <td>(1) 기존시설</td> <td>2003년 1월 1일부터 70(6)ppm이하</td> </tr> <tr> <td>(2) 신규시설</td> <td>50(6)ppm이하</td> </tr> <tr> <td>나. 기체연료사용시설</td> <td></td> </tr> <tr> <td>(1)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을 포함한다)</td> <td></td> </tr> <tr> <td>(가) 기존시설</td> <td>2003년 1월 1일부터 100(13)ppm이하</td> </tr> <tr> <td>(나) 신규시설</td> <td>50(13)ppm이하</td> </tr> <tr> <td>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td> <td></td> </tr> <tr> <td>가. 신규시설</td> <td>50(12)ppm이하</td> </tr> </tbody> </table> <p>비고 1.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p> <p>2.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p> <p>3. 기존시설이라 함은 2002년 4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과 2002년 4월 29일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시설(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p> <p>4. 신설</p> <p>5. 신설</p>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설비용량 100MW이상)		(1)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70(6)ppm이하	(2) 신규시설	50(6)ppm이하	나. 기체연료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100(13)ppm이하	(나) 신규시설	50(13)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신규시설	50(12)ppm이하	<p>[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오염물질</th> <th style="width: 45%;">배출시설 및 적용시기</th> <th style="width: 40%;">배출허용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6">질소산화물(NO₂로서)</td> <td>1. 발전시설</td> <td></td> </tr> <tr> <td>가. 고체연료 사용시설</td> <td></td> </tr> <tr> <td>1) 설비용량 100MW 이상</td> <td></td> </tr> <tr> <td>가) 기존시설</td> <td></td> </tr> <tr> <td>(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td> <td>50(6)ppm이하</td> </tr> <tr> <td>(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td> <td>15(6)ppm이하</td> </tr> <tr> <td>나) 신규시설</td> <td>10(6)ppm이하</td> </tr> <tr> <td>나. 기체연료 사용시설</td> <td></td> </tr> <tr> <td>1)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 포함)</td> <td></td> </tr> <tr> <td>가) 기존시설</td> <td></td> </tr> <tr> <td>(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td> <td>60(15)ppm이하</td> </tr> <tr> <td>(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td> <td>30(15)ppm이하</td> </tr> <tr> <td>(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td> <td>10(15)ppm이하</td> </tr> <tr> <td>나) 신규시설</td> <td>10(15)ppm이하</td> </tr> <tr> <td>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td> <td></td> </tr> <tr> <td>가) 기존시설</td> <td>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td> </tr> <tr> <td>나) 신규시설</td> <td></td> </tr> <tr> <td>(1) 발전용 내연기관</td> <td>10(15)ppm이하</td> </tr> <tr> <td>(2) 그 밖의 발전시설</td> <td>13(4)ppm이하</td> </tr> <tr> <td>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td> <td></td> </tr> <tr> <td>가. 기존시설</td> <td></td> </tr> <tr> <td>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td> <td>60(12)ppm이하</td> </tr> <tr> <td>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td> <td>50(12)ppm이하</td> </tr> <tr> <td>나. 신규시설</td> <td>35(12)ppm이하</td> </tr> <tr> <td>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td> <td></td> </tr> <tr> <td>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td> <td>60(12)ppm이하</td> </tr> <tr> <td>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td> <td>40(12)ppm이하</td> </tr> </tbody> </table>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배출허용 기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50(6)ppm이하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15(6)ppm이하	나) 신규시설	10(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 포함)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ppm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ppm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5)ppm이하	나) 신규시설	10(15)ppm이하	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10(15)ppm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13(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2)ppm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ppm이하	나. 신규시설	35(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60(12)ppm이하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40(12)ppm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설비용량 100MW이상)																																																																																
	(1)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70(6)ppm이하																																																																															
	(2) 신규시설	50(6)ppm이하																																																																															
	나. 기체연료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100(13)ppm이하																																																																															
(나) 신규시설	50(13)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신규시설	50(12)ppm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배출허용 기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50(6)ppm이하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15(6)ppm이하																																																																															
	나) 신규시설	10(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 포함)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ppm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ppm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5)ppm이하																																																																															
	나) 신규시설	10(15)ppm이하																																																																															
	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10(15)ppm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13(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2)ppm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ppm이하																																																																																
나. 신규시설	35(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60(12)ppm이하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40(12)ppm이하																																																																																

황산화물 (S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기체연료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40(6)ppm이하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23(6)ppm이하
	나) 신규시설	15(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미만 (LNG사용시설 제외)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그 밖의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포함)	90(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20(12)ppm이하
	나. 신규시설	15(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15(12)ppm이하	
(2)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10(12)ppm이하	

1. 배출시설이란 ----- 제23조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3. 기존시설이란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배출시설이 가동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득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4. 발전시설의 기체연료 사용시설 중 100MW 미만의 기존시설은 다음의 기준 농도를 적용한다.

사업장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 에코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40(4)ppm이하
	황산화물(SO ₂ 로서)	120(4)ppm이하
(2) 미래엔인천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48(4)ppm이하
(3) 인천공항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70(15)ppm이하
(4) 인천종합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40(15)ppm이하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